

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제출자 : 거창군수(행정과)
- 회부일자 : 2006. 12. 7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12. 13(제7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70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
-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조정
 - 공무원 정원 : 680명(변동없음)
 - 직급별 정원 조정(5급 : 31명 ⇒ 32명, 9급 : 64명 ⇒ 63명)
 - 소속기관별 정원 조정 : 복지관담당 본청 이관(4명)
 - * 본청 : 265명 ⇒ 269명(증 4명) * 사업소 : 64명 ⇒ 60명(감 4명)
 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 - 당초 06.12.31일 ⇒ 변경 08.12.31일로 연장
 - * 복식부기 전담 인력 : 2명(6급 1, 8급 1)
 - * 일제강점 하 피해 진상규명 전담 인력 : 1명(7급)
 -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공무원 총 정원인 680명에 대하여는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중
 - 5급의 정원을 31명 ⇒ 3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대신
 - 9급의 정원을 64명 ⇒ 63명으로 1명을 감원하려는 것이며,
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현 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(6급 3명, 7급 3명, 8급 2명)중 3명(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)이 2006. 12. 31일부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부칙 조항을 2008. 12. 31로 연장하려는 것으로
 -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된 사항이었음을 확인되었으며
-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